제4차산업경제위원회
2014.12.09(화) 13:30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나기성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김인수 의원 등 7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4년 12월 1일

나. 회부일자 : 2014년 12월 2일

3. 제안 이유

○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용중인 조례 중 자문위원회 인원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기업애로지원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수를 현실에 맞게 개정 (안 제18조)

5. 검토의견

○ ‘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기업애로지원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10명에서 20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로인해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가 기대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.